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폐기물 등의 수거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신설(안 제2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폐의약품, 폐농약 등 포함)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성과를

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개정2017. 11. 28., 시행 2018. 5. 29.) 되었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음.
- 구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해 조례상 명확히 정의하고, 처리방법 및 수거주기를 구체화함으로써, 생활계 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제2조(정의)제10호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취지인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
-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제1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 제2항은 처리방법에 관하여 구체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 제3항은 수거주기를 명시하면서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7은 「2025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폐비닐의 분리배출을 명문화하여 선별률을 향상하고,
 - ‘물로 행구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종량제봉투로 반입되는 폐비닐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르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리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폐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5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의자: 이순우, 이규선, 최인순
신흥식, 차인영,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폐기물 등의 수거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 등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3.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용비닐봉투	1회	-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 을 제거하여 배출
----------------	-------------------	----	-------------------------------

		<p>-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p> <p>※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p> <p>※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등은 종량제 봉투에, 고무장갑, 장화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장판, 돛자리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p>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